##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48 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: 박정현·김남근·박홍배

문진석 • 이재정 • 김현정

이광희 • 이학영 • 조승래

신정훈 · 김동아 의원

(119]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영국, 프랑스,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 담하고 있으며,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 하고 있음.

반면,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해왔으나,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하였고, 박근혜 정부에서는 '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'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,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음.

마찬가지로 이번 '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' 와 관련해서도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검찰, 경찰 등 사법기 관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.

이에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고, 대통령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한편,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한임무에 특화된 경찰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자 함(안 제7조제3항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047호), 「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 률안」(의안번호 제9049호) 및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04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전단 중 "국가수사본부장"을 "대통령경호본부장, 국가수사본부장"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대통령경호본부 소속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7조(임용권자) ① • ② (생        | 제7조(임용권자) ① • ② (현행   |  |  |
| 략)                        | 과 같음)                 |  |  |
|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           | ③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특별시장 • 광역시장 • 도지사 •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시자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다), <u>국가수사본부장</u> , 소속 기 | <u>대통령경호본부장, 국가수사</u> |  |  |
| 관의 장, 시·도경찰청장에게           | <u>본부장</u>            |  |  |
|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ㆍ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에 따라 「국가경찰과 자치경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률」 제18조에 따른 시・도자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치경찰위원회(이하 "시·도자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치경찰위원회"라 한다), 시·도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④ · ⑤ (생 략)               |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        |  |  |
| 제10조(신규채용) ① • ② (생       | 제10조(신규채용) ① • ② (현행  |  |  |
| 략)                        | 과 같음)                 |  |  |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(이하 "경력경쟁채용시험"이라 한다)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. 다만,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.

1. ~ 8. (생 략) <신 설>

④ (생 략)

| (3)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1. ~ 8. (현행과 같음) |

- 9.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대통령경 호본부 소속 경찰공무원을 임 용하는 경우
- ④ (현행과 같음)